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3)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4)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 1)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 2)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 1)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 2)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①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0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③ 제1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① 피보험자가 제18조(손해방지 의무)의 제1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8조(손해방지 의무) 제1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③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④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제1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9)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0)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체육지도자,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등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1)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①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3)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①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②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 15)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6) 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7)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1)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①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②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제8조(보상한도)

- 1)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회사는 매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단, 사망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1. 내지 5.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

는 경우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2.의 비용, 3.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 비용과 4.의 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다른 의무보험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을 경우 제22조(보험금분담조항)를 따릅니다.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1조(계약후 알릴 의무)

- 1)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시설을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 때
 - ④ 시설의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
 - ⑤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였을 때
-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보험료) 제2항에 따릅니다.
- 3)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 1)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0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③ 상당한 이유없이 제25조(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 4) 회사가 제3항 1.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 ③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 5)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항 1. 및 2.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3조(타인을 위한 계약)

- 1)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5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양도)

- 1)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2) 사업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양수인은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7조(사고의 발생과 통지)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뺍니다.

제18조(손해방지 의무)

- 1)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②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③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3)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4)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보험증권
 - ③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3) 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서류, 증거를 위조, 변조한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22조(보험금의 분담)

- 1)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4조(대위권)

-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5조(조사)

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0조(약관의 해석)

-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有體物)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자 동 차	<p>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계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더,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더, 스크레퍼, 로울러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3) 에어컴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5) 위 1)내지 4)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컴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체육지도자	체육지도자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 또는 기타 공인된 사회기관에 의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내치료비지급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체육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하 「타인」이라 합니다)이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2)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4)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5)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7)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8)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방사선, 방사능, 원자핵 물질에 의한 손해 및 공해물질로 인한 손해
- 9) 피보험자의 법률상, 계약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
- 10) 상해를 입은 타인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체육지도자를 포함합니다)가 치료하여 가중된 손해
- 11) 체육시설 구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1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①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②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13)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타인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치료비	치료비라 함은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 치료, 수술, X선 검사 및 간호비② 치과 진료비③ 의료보험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비
-----	--

물적손해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 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재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줌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가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 내용	명 칭 : 임경자 용 도 : 골프연습장 면 적 : 300.00평 설치장소 : (411-330)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514-3 백마골프연습장
업무 내용	업 무 명 : 관리자수 :
보상한도액	

주차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단,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2항 제외) 및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8)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차량의 사용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
- 1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2)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구 조 : 면 적 : 권리관계 : (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 관리인여부
업무내용	